|  |  |  |
| --- | --- | --- |
| **해협양안 경제합작 기본협의****서 문**해협양안(중국과 대만)관계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와 평등호혜, 순차진행 원칙에 따라 해협양안 경제무역관계의 염원을 달성한다. 쌍방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쌍방의 경제조건을 고려하고, 양자간의 무역 및 투자 장애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하는 것, 공평한 무역 및 투자환경 창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해협양안 경제합작 기본협의》(이하 ‘본 협의’)에 서명을 통해 쌍방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진일보 증진하여, 양안의 경제번영과 발전의 합작 메커니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협상을 통해 달성한 협의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제1조 목표** 본 협의의 목표: 1. 쌍방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합작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킨다. 2. 쌍방 화물, 서비스 무역의 진일보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점진적으로 공평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투자 및 그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경제합작의 영역을 확대하고,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2조 합작조치** 쌍방은 쌍방의 경제조건을 고려하여, 이하 조치(단, 아래에 한정되지 않음)를 도입하고, 해협양안의 경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1. 쌍방간의 실질적인 재화무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2. 쌍방간의 여러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3. 투자 보호를 제공하며, 쌍방의 투자를 촉진한다. 4. 무역투자 편리화와 산업교류 및 합작을 촉진한다. **제2장 무역과 투자****제3조 재화무역** 1. 쌍방은 본 협의 제7조가 규정한 “재화무역 조기수확”을 기초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늦지 않게 재화무역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완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재화무역 상세협의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관세양허 또는 철폐방식(2) 원산지 원칙 (3) 해관절차(4) 비관세조치는 기술성 무역장벽(TBT),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SPS)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 무역구제조치는 쌍방간 재화무역의 쌍방보장조치에 세계무역기구 《1994년 관세와 무역 총 협정 제6조의 규정 실시에 관함》, 《보조금과 반보조금 조치협정》, 《보장조치 협정》 규정이 조치 및 적용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본 조 재화무역 협의에 포함된 제품은 즉시 0관세 제품, 단계적 관세감소 제품, 영외 또는 기타제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4. 쌍방은 모두 재화무역 협의 규정의 관세양허 동의를 기초로 하여, 자주적으로 관세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제4조 서비스 무역** 1. 쌍방은 제8조가 규정한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을 기초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늦지 않게 서비스 무역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완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서비스 무역협의의 상세협의는 아래의 사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쌍방간의 여러 부문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2)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3) 쌍방 서비스무역 영역의 합작을 증진시킨다. 3. 쌍방은 모두 서비스 무역 협의 규정의 개방동의를 기초로 하여, 자주적으로 개방을 가속화 하거나 제한적 조치를 철폐할 수 있다. **제5조 투 자** 1. 쌍방은 본 협의의 효력발생 후 6개월 내에, 본 조 제2항이 기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달성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2. 본 협의는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투자 보장 메커니즘 구축 (2) 투자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3) 쌍방 상호간 투자제한의 점진적 철폐(4) 투자편리화 촉진**제3장 경제합작****제6조 경제합작**1. 본 협의의 효익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쌍방은 아래의 합작에 동의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지적재산권 보호와 합작(2) 금융합작(3) 무역촉진 및 무역 편리화 (4) 해관합작(5) 전자 비즈니스 합작 (6) 쌍방의 산업합작의 배치와 중점분야를 연구하고 쌍방의 중대항목 합작을 도모하며, 쌍방의 산업합작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7) 쌍방 중소기업의 합작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8) 쌍방의 경제무역 단체의 업무기구 공동설립을 촉진한다. 2. 쌍방은 본 조 합작의 구체적 계획과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신속히 협상 전개한다. **제4장 조기수확****제7조 재화무역 조기수확**1. 본 협의의 목표를 가속화 하기 위해 쌍방은 첨부1에 열거된 제품들의 조기수확계획 실시에 동의하며, 조기수확 계획은 본 협의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화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쌍방은 첨부1에 열거된 조기수확 제품 및 감세 계획에 따라 감세를 실시한다. 그러나 쌍방은 각자 기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비임시성 수입관세세율이 비교적 낮을 경우, 그 세율을 적용한다. (2) 본 협의 첨부1에 열거한 제품은 첨부2의 임시 원산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본 규칙에 의거하여 상술한 원산지가 어느 일방인 제품을 상대 일방이 수입할 경우 관세우대 혜택을 받는다. (3) 본 협의 첨부1에 열거된 제품이 적용 받는 임시무역 구제조치는 본 협의 제3조 제2항 제5번이 규정한 조치를 뜻하며, 그 중 쌍방은 본 협의 첨부3에 조치를 삽입할 것을 보장한다. 3. 쌍방은 본 협의 제3조에 근거하여 재화무역 협의 효력발생일부터 본 협의 첨부2에서 설명한 임시 원산지 규칙과 본 조 제2항 제3번이 규정한 임시 무역 구제조치 규칙적용을 종지(终止)한다. **제8조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1. 본 협의의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쌍방은 첨부4에 열거한 서비스 무역부문의 조기수확 계획실시에 동의하며, 조기수확 계획은 반드시 본 협의 효력발생 후 가능한 신속하게 실시한다. 2.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일방은 첨부4에 설명한 서비스 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조치에 따라, 상대 일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감소시키거나 철폐한다. (2) 본 협의 첨부4가 열거한 서비스무역 부문 및 개방조치는 첨부5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자 정의를 적용받는다. (3) 쌍방은 본 협의 제4조에 근거하여 서비스 무역협의 효력발생일부터 본 협의 첨부5에서 규정한 서비스 제공자 정의의 적용을 종지(终止)한다. (4) 만약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계획의 실시로 인해 상대 일방의 서비스 부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한 경우, 손해가 조성된 일방이 상대 일방에게 상세협의를 요구하며, 해결방안을 찾는다. **제5장 기 타****제9조 열 외** 본 협의의 모든 규정은 어느 일방이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일치하는 열외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석할 수 없다. **제10조 분쟁해결**1. 쌍방은 본 협의 효력발생 6개월 내에 늦지 않게 합당한 분쟁해결 절차 구축에 대한 협의를 전개한다. 가능한 신속히 협의를 달성하고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2. 본 조 제1항이 가리키는 분쟁해결 협의의 효력발생 전,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쌍방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본 협의의 제11조의 “양안경제합작위원회”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11조 기구배치** 1. 쌍방은 “양안경제합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쌍방이 지정한 대표로 구성하며,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본 협의 목표 실시에 필요한 세부협상을 완성(2) 본 협의 집행의 감독 및 평가 (3) 본 협의 규정의 해석(4) 중요 경제무역 정보 통보(5) 본 협의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협의의 해석, 실시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업무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은 특정 분야 중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쌍방의 동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 협의에 관련된 업무사항은 쌍방 업무 주관부문이 지정한 연락인이 책임지고 연락한다. **제12조 문서형식** 본 협의가 진행된 업무관계에 기초하여 쌍방이 상정한 문서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첨부 및 후속협의** 본 협의의 첨부 및 본 협의의 서명에 근거한 후속협의는 본 협의의 일부분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수 정** 본 협의의 수정은 쌍방의 협상, 동의를 거쳐야 하며 서면형식으로 확인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본 협의의 서명 후 쌍방은 각자 관련절차를 완성하고 서면으로 상대 일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협의는 쌍방이 모두 상대 일방의 통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종지(终止)**1. 일방이 본 협의를 종지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상대 일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종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곧 본 협의는 통지한 일방이 종지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80일에 종지된다. 2. 본 협의 종지 후 30일 내에, 쌍방은 본 협의 종지로 인행 발생한 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본 협의는 6월 29일 서명하였으며, 1식 4부이고, 쌍방이 각각 2부씩 보관한다. 4부 문건 중 다른 용어로 쓰였으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에 대해, 4부 문건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첨부1: 재화무역 조기수확 제품 명세서 및 감세계획첨부2: 재화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제품의 임시원산지 규칙 첨부3: 재화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제품의 쌍방 보장조치 첨부4: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부문 및 개방조치 첨부5: 서비스무역 조기수확이 적용되는 부문 및 개방조치의 제공자 정의 해협양안관계협회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회장: 천윈린(陈云林) 동사장: 쟝빙쿤(江丙坤)  |  | **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序 言**海峡两岸关系协会与财团法人海峡交流基金会遵循平等互惠、循序渐进的原则，达成加强海峡两岸经贸关系的意愿；双方同意，本着世界贸易组织（WTO）基本原则，考虑双方的经济条件，逐步减少或消除彼此间的贸易和投资障碍，创造公平的贸易与投资环境；通过签署《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以下简称本协议），进一步增进双方的贸易与投资关系，建立有利于两岸经济繁荣与发展的合作机制；经协商，达成协议如下：**第一章 总 则****第一条 目 标**本协议目标为：一、加强和增进双方之间的经济、贸易和投资合作。二、促进双方货物和服务贸易进一步自由化，逐步建立公平、透明、便利的投资及其保障机制。三、扩大经济合作领域，建立合作机制。**第二条** **合作措施**双方同意，考虑双方的经济条件，采取包括但不限于以下措施，加强海峡两岸的经济交流与合作：一、逐步减少或消除双方之间实质多数货物贸易的关税和非关税壁垒。二、逐步减少或消除双方之间涵盖众多部门的服务贸易限制性措施。三、提供投资保护，促进双向投资。四、促进贸易投资便利化和产业交流与合作。**第二章 贸易与投资****第三条** **货物贸易**一、双方同意，在本协议第七条规定的“货物贸易早期收获”基础上，不迟于本协议生效后六个月内就货物贸易协议展开磋商，并尽速完成。二、货物贸易协议磋商内容包括但不限于：（一）关税减让或消除模式；（二）原产地规则；（三）海关程序；（四）非关税措施，包括但不限于技术性贸易壁垒（TBT）、卫生与植物卫生措施（SPS）；（五）贸易救济措施，包括世界贸易组织《关于实施1994年关税与贸易总协定第六条的协定》、《补贴与反补贴措施协定》、《保障措施协定》规定的措施及适用于双方之间货物贸易的双方保障措施。三、依据本条纳入货物贸易协议的产品应分为立即实现零关税产品、分阶段降税产品、例外或其他产品三类。四、任何一方均可在货物贸易协议规定的关税减让承诺的基础上自主加速实施降税。**第四条** **服务贸易**一、双方同意，在第八条规定的“服务贸易早期收获”基础上，不迟于本协议生效后六个月内就服务贸易协议展开磋商，并尽速完成。二、服务贸易协议的磋商应致力于：（一）逐步减少或消除双方之间涵盖众多部门的服务贸易限制性措施；（二）继续扩展服务贸易的广度与深度；（三）增进双方在服务贸易领域的合作。三、任何一方均可在服务贸易协议规定的开放承诺的基础上自主加速开放或消除限制性措施。**第五条** **投 资**一、双方同意，在本协议生效后六个月内，针对本条第二款所述事项展开磋商，并尽速达成协议。二、该协议包括但不限于以下事项：（一）建立投资保障机制；（二）提高投资相关规定的透明度；（三）逐步减少双方相互投资的限制；（四）促进投资便利化。**第三章 经济合作****第六条 经济合作**一、为强化并扩大本协议的效益，双方同意，加强包括但不限于以下合作：（一）知识产权保护与合作；（二）金融合作；（三）贸易促进及贸易便利化；（四）海关合作；（五）电子商务合作；（六）研究双方产业合作布局和重点领域，推动双方重大项目合作，协调解决双方产业合作中出现的问题；（七）推动双方中小企业合作，提升中小企业竞争力；（八）推动双方经贸社团互设办事机构。二、双方应尽速针对本条合作事项的具体计划与内容展开协商。**第四章 早期收获****第七条 货物贸易早期收获**一、为加速实现本协议目标，双方同意对附件一所列产品实施早期收获计划，早期收获计划将于本协议生效后六个月内开始实施。二、货物贸易早期收获计划的实施应遵循以下规定：（一）双方应按照附件一列明的早期收获产品及降税安排实施降税；但双方各自对其他所有世界贸易组织成员普遍适用的非临时性进口关税税率较低时，则适用该税率；（二）本协议附件一所列产品适用附件二所列临时原产地规则。依据该规则被认定为原产于一方的上述产品，另一方在进口时应给予优惠关税待遇；（三）本协议附件一所列产品适用的临时贸易救济措施，是指本协议第三条第二款第五项所规定的措施，其中双方保障措施列入本协议附件三。三、自双方根据本协议第三条达成的货物贸易协议生效之日起，本协议附件二中列明的临时原产地规则和本条第二款第三项规定的临时贸易救济措施规则应终止适用。**第八条** **服务贸易早期收获**一、为加速实现本协议目标，双方同意对附件四所列服务贸易部门实施早期收获计划，早期收获计划应于本协议生效后尽速实施。二、服务贸易早期收获计划的实施应遵循下列规定：（一）一方应按照附件四列明的服务贸易早期收获部门及开放措施，对另一方的服务及服务提供者减少或消除实行的限制性措施；（二）本协议附件四所列服务贸易部门及开放措施适用附件五规定的服务提供者定义；（三）自双方根据本协议第四条达成的服务贸易协议生效之日起，本协议附件五规定的服务提供者定义应终止适用；（四）若因实施服务贸易早期收获计划对一方的服务部门造成实质性负面影响，受影响的一方可要求与另一方磋商，寻求解决方案。**第五章 其 他****第九条** **例 外**本协议的任何规定不得解释为妨碍一方采取或维持与世界贸易组织规则相一致的例外措施。**第十条** 争端解决一、双方应不迟于本协议生效后六个月内就建立适当的争端解决程序展开磋商，并尽速达成协议，以解决任何关于本协议解释、实施和适用的争端。二、在本条第一款所指的争端解决协议生效前，任何关于本协议解释、实施和适用的争端，应由双方通过协商解决，或由根据本协议第十一条设立的“两岸经济合作委员会”以适当方式加以解决。**第十一条** **机构安排**一、双方成立“两岸经济合作委员会”（以下简称委员会）。委员会由双方指定的代表组成，负责处理与本协议相关的事宜，包括但不限于：（一）完成为落实本协议目标所必需的磋商；（二）监督并评估本协议的执行；（三）解释本协议的规定；（四）通报重要经贸信息；（五）根据本协议第十条规定，解决任何关于本协议解释、实施和适用的争端。二、委员会可根据需要设立工作小组，处理特定领域中与本协议相关的事宜，并接受委员会监督。三、委员会每半年召开一次例会，必要时经双方同意可召开临时会议。四、与本协议相关的业务事宜由双方业务主管部门指定的联络人负责联络。**第十二条** **文书格式**基于本协议所进行的业务联系，应使用双方商定的文书格式。**第十三条** **附件及后续协议**本协议的附件及根据本协议签署的后续协议，构成本协议的一部分。**第十四条** **修 正**本协议修正，应经双方协商同意，并以书面形式确认。**第十五条** **生 效**本协议签署后，双方应各自完成相关程序并以书面通知另一方。本协议自双方均收到对方通知后次日起生效。**第十六条** **终 止**一、一方终止本协议应以书面通知另一方。双方应在终止通知发出之日起三十日内开始协商。如协商未能达成一致，则本协议自通知一方发出终止通知之日起第一百八十日终止。二、本协议终止后三十日内，双方应就因本协议终止而产生的问题展开协商。本协议于六月二十九日签署，一式四份，双方各执两份。四份文本中对应表述的不同用语所含意义相同，四份文本具有同等效力。附件一：货物贸易早期收获产品清单及降税安排附件二：适用于货物贸易早期收获产品的临时原产地规则附件三：适用于货物贸易早期收获产品的双方保障措施附件四：服务贸易早期收获部门及开放措施附件五：适用于服务贸易早期收获部门及开放措施的服务提供者定义海峡两岸关系协会 财团法人海峡交流基金会会长：陈云林 董事长：江丙坤 |